

국가검정 동물약품 검정규칙 개정

국가검정 동물약품 검정규칙이 농림수산부령 제 1123호(93.6.22)로 개정 공포되어 93년 9월 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.

— 농림수산부령 제 973호 (87. 5. 26) —

제 2조(정의) ① 이 영에서 "국가검정동물약품"이라 함은 동물용의 항생물질과 그 제제 생물학적 제제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동물약품을 말한다.
 ② 이 영에서 "항생물질"이라 함은 미생물이 산출하는 물질 또는 이와 동일한 화학적 구조를 가진 물질로서 미생물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.
 ③ 이 영에서 "항생물질제제"란 항생물질을 함유하는 동물약품(그 함유는 항생물질의 양이 극히 적은 항생물질제제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)을 말한다.
 ④ 이 영에서 "생물학적제제"란 환은 혈청예방약, 진단약과 이에 준하는 동물약품으로서 동물의 질병과 진단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
제 3조(검정기관) 국가검정동물약품의 검정은 가족위생연구소(이하 "검정기관"이라 한다)에서 행한다.

제 5조(검정품) ① 국가검정동물약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동물약품을 최종 용기에 분주한 후 봉인에 적합한 상지류 또는 시실에 넣고 발지 제 1호 서식에 정한 내용명세서들 각 상자의 표면에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6조(검정품등의 발매) ①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검정품 중에서 보관품과 검정품을 발췌하게 하고 검정 신청한 나머지 동물약품 전부를 봉인하여야 한다.
 ②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발췌한 보관품은 이를 봉인한 후 검정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 ③ 검정신청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보관품을 당해 동물약품의 유효기간 경과후 9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.
 ④ 검정품 및 보관품의 발매수량, 발매방법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이 정한다.

제 8조(검정통지등) ① 검정기관이 동물약품의 검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검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② 검정기관은 동물약품국가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검정증지를 교부하고 이를 합격품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. 검정기관은 국가검정동물약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합격품에 국가검정증지를 붙이는데 임의하게 할 수 있다.
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검정증지를 교부받은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증지의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9조(불합격품의 처분) 농림수산부장관은 생물학적 제제의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소속동물약사 감시원으로 하여금 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정신청자로부터 제 검정의 신청이나 재사용을 위하여 폐기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— 농림수산부령 제 1123호 (93. 6. 22) —

제 2조(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범위) ① 법 제 4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1. 항생물질과 그 제제중 외용제(안과용제를 제외한다)가 아닌 제제
 2. 생물학적 제제중 제조번호를 부여할 수 없거나, 검정이 곤란한 것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제제를 제외한 제제
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.
 1. 수출을 위한 동물용의약품. 다만, 수입자가 검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2.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우수업체에서 제조하는 동물용의약품
 3. 동물용의약품의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원료용 항생물질

제 3조(검정기관) 검정은 농촌진흥청 소속 가족위생연구소에서 행한다. 단, 농림수산부장관이 검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연구기관등 검정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 5조(검정제품)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동물용의약품을 검정제품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6조(시공품등의 발매) 검정을 위한 시공품 및 보관품의 발매방법, 발매량 기타 발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 8조(검정결과 통지등)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검정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② 검정합격의 표시방법등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검정합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 9조(불합격품의 처분등)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검정신청인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공신청 또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조치를 하게 하고,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해당 제품의 성상을 고려하여 소각·매몰 또는 고압멸균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— 부 칙 —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② (검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제출한 검정신청서에 따른 검정제품의 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* 개정령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요령은 93년 7월중 고시 예정임.

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사용 잠정조치

농림수산부는 93년 6월 10일부터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-21호 : '86.8.2) "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 사용기준"에 의한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, 혼합할 수 있는 동물약품에 옥시테트라사이클린, 황산네오마이신 합제와 아빌라마이신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동 사용기준 개정시까지 잠정 조치했다.


(사료첨가 유효성분)

대상배합사료 품 명	닭					돼 지				소	
	병아리용	육 계 용			총계용	어 린 돼지용	육성돈용	비육돈용 (정기)	모돈용	어 린 송아지용	중 송아지용
		전 기	중 기	후 기							
옥시테트라사이클린 + 황산네오마이신	55-110	55-110	55-110	55-110	55-110	55-110	55-110	-	55-110	55-110	55-110
아빌라마이신	55-220	55-220	55-220	55-220	55-220	55-220	55-220	-	55-220	55-220	55-220
아빌라마이신	2.5-10	2.5-10	2.5-10	2.5-10	-	20-40	10-20	10-20	-	-	-

패키지 디자인

썸크 스크린 인쇄

나라는 자신합니다.
 나라가 가지는 원대한 꿈
 그것은 최고의 패키지로
 패키지 시장을
 석권하는 것입니다.



"에칭인쇄"
각종 고급 패키지
우수한 생산시스템
디자인에서 납품까지

Nara
썸크인쇄
Nara Industry Co., Ltd.

본사/서울 성북구 동소문 367-6 (연희빌딩)
 TEL: (02) 291-0021 FAX: (02) 299-3833
 공장/서울 성북구 성소2가 331-27
 TEL: 498-6548, 9 FAX: 498-6549